



# 명예와 신용 존중

## 1.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 ▲ 2013-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7월 10일자 1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기성용/▶‘최강희 감독 조롱’ 페이스북 비밀 계정 다시 손대자 파문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특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최강희 감독 조롱’으로 논란이 됐던 비밀 계정 페이스북에 다시 손을 댔다. 8일 오후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교체한데 이어 이석희의 시집 ‘삶도 사랑도 물들어 가는 것’ 중 ‘누가 그랬다’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시의 전문이다. 기성용은 개인 의견을 더하지 않았다. 그는 9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다. 기성용은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 비밀 계정을

통해 최 감독을 조롱했다. 4일 이 글이 세상에 공개됐고, 5일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저의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머리를 숙였다.

기성용이 페이스북을 또 만진 시기는 들썩이던 비난 여론이 식기도 전이다.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았더라도, 또 즉각 페이스북을 폐쇄했더라도 시기상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시의 내용도 오해를 살만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쏠린다는 현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이를 두고 굽지 않은 시선이 그를 향하는 것은 당연했다. 네티즌들은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분위기 파악이 안됐다’며 질책했다.

자초한 일이다. 신중했어야 한다. 백마디의 말보다는 자숙을 위한 ‘침묵’이 필요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SNS 논란’이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더라도 기성용은 언행에 항상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SNS의 재사용은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축구계 선배들의 충고가 있었다. 조롱의 대상이 된 최강희 전북 감독도 그를 감싸 안았다. “기성용은 한국 축구를 위해 큰 일을 할 선수다. (대표팀) 감독도 바뀌었으니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축구계가 그의 잘못과 뉘우침을 끌어안았다. 축구협회는 10일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자숙과 반성이다. 기성용이 사과문을 통해 직접 밝혔다. ‘저는 앞으로 더욱 축구에 전념하여 지금까지 보여주신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 뿐인 사과가 아니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얘기해야 한다”는 축구계 선배들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한다. ‘뉴스 메이커’가 아닌 성숙한 축구선수

기성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7110100083160006124&servicedate=201307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최강희 감독 조롱’ 권으로 파문을 일으킨 축구 스타 기성용이 지난 7월 8일 페이스북 비밀계정에 이석희 시인의 시 ‘누가 그랬다’를 전문 게재한 사실을 놓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에 논란에 불 지필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 큰 제목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기성용」이라고 비판조로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기성용은 7월 8일 오후 페이스북 비밀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교체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로 끝나는 이석희 시인의 시 전문을 본인의 의견은 전혀 달지 않은 채 올렸다. 그리고 하루 만인 9일 오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았더라도, 또 즉각 페이스북을 폐쇄했더라도 시기상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하고 『시의 내용도 오해를 살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 기사가 문제를 삼은 대상이 페이스북 비밀계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밀계정은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극히 제한된 소통의 공간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간 글을 공개리에 문제 삼는 것은 그 내용이 명백하게 공익과 직결되지 않는 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기성용이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을 저질렀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보호받아 마땅할 사생활이 있다. 페이스북 비밀계정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시를 올린 사실만 놓고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고 1면 톱으로 질책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에다, 독자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선정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1257 신문윤리강령 위반

#### 중부일보 발행인 임재울

##### 〈주문〉

중부일보 2013년 10월 14일자 22면 「도교육청 전 현직 간부간 진실공방 술렁/“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돼” 눈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가 벌이고 있는 진실 공방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월권을 행사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을 압박했다는 사유로 B씨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지난 8월12일께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모 교육지원청 직원 C씨에 대한 언급과 함께 A씨와 C씨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

다”며 혀를 차거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해 4월 A씨가 퇴임하기 전까지 A씨와 B씨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초 A씨와 C씨의 치정(癡情)이 도교육청 감사로 비화된 듯 하다.

연인 C씨와의 관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비밀 연애 및 사정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부터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직위 및 직무상 맡은 임무로 인해 C씨의 처지에서 판단하게 된 B씨가 정외감(?)에 불타 이미 헤어진 C씨에게 집착하는 A씨에게 관계 청산을 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전직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부탁을 해서 못하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A씨가 섭섭해한 것 같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위 및 직무상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압박했고,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라며 “도교육청이 무슨 이유로 민원 사항을 덮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당초 해당 사건을 지난달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21일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조사 및 확인에 추가 기간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가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현직 간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간부와 교육지원청 모 직원 간의 치정문제가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전직 간부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 현직 간부 B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 B씨가 월권을 행사해 얻은 정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그 압박사례로 B씨가 A씨에게 연인관계였던 모 교육청직원 C씨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기사는 『당초 A씨와 C씨의 치정(癡情)이 도교육청 감사로 비화된 듯하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이해 당사자 간에 명예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치정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는 근거를 『알려졌다』 『전해졌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등으로 기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기사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 A씨, 현직 간부 B씨’ ‘지난해 4월 A씨의 퇴임’ ‘A씨와 B씨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사이’라는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인연과 관계, A씨의 퇴임시기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보도로 A씨는 물론이고, B씨와 C씨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때문에 이들의 명예와 신용을 고려해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점과 관련해 신문윤리강령은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1월 27일자 A10면 「경찰 남편 둔 女警, 동료와 ‘양다리 불륜’ 의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관 남편을 둔 현직 여경(女警)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 소속 C(32)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속상관 C 경감, 다른 부서 P 경사와 불륜 행각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감찰 대상이 됐다. C 순경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서울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편 K 경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C 순경은 K 경장과 2011년 5월 결혼했다.

K 경장은 C 순경의 휴대전화를 바꿔주기 위해 가져갔다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고 감찰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을 담당하는 한 경찰 간부는 “C 순경과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두 경찰관 모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7/201401270013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7/2014012700138.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현직 여경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과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의심돼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에 ‘양다리 불륜’이라는 표현을 넣어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관 남편을 둔 수서경찰서 소속 현직 여경인 C 순경이 같은 경찰서의 직속상관 C 경감, 다른 부서 P 경사와 불륜 행각을 저질러 감찰 대상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불륜 여부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C 순경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영문 이니셜로 익명 처리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C 순경과 C 경감, P 경사가 수서경찰서 소속이라는 것과 C 순경이 남편 K 경장과 결혼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챌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사자의 명예존중

### ▲ 2013-131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3년 12월 3일자 A10면 「빛 고민하던 조폭출신 30대 家長 가족 살해 후 교통사고 내 숨겨/펜션서 유서·3명 시신 발견/“1억5000만원 빛 감당 어려워”」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朝鮮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채로 고민하던 조폭 출신 30대가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도 숨졌다.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13분쯤 이모(33·무직·충북 청주 거주)씨는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BMW 승용차를 몰고 과속하다 좌회전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정면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박모(38)씨 가족 4명은 외식 후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박씨는 흉부 골절상(전치 4주 이상) 등을 입었고 아내(34)는 코뼈 골절, 7세와 2세 난 두 아들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한 펜션 방안에선 이씨의 부인(33), 딸(9), 아들(6)이 모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에선 먹다 남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 펜션 안에서는 이씨가 쓴 편지지 3장 분량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1억5000만원가량 되는 빚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혼자 가면 가족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장례를 치르지 말고 함께 화장해 달라’는 등 가족을 살해한 것을 암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손위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처남은 119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8시 4분쯤 제원리 봉황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신분을 확인했으며, 손목에 자해 시도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병원행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차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지구대 쪽에 주차하겠다”고 말하고 차에 오른 뒤 갑자기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나는 이씨 차를 순찰차로 추적했지만, 이씨의 차는 과속을 하다 지구대에서 1 km 정도 떨어진 제원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이씨가 식당 등을 하다 장사가 잘 안 됐고, 최근 폐전선 수집 사업을

준비했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3/201312030012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3/2013120300122.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채로 고민하던 3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진 사건을 다룬 사건기사다.

朝鮮日報는 이 기사 도입부와 제목에서 숨진 가장 이 모 씨를 『조폭 출신』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씨가 조폭 출신이라고 해도 기사 내용을 보면 그가 일을 저지른 것이 과거에 조폭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폭 출신’이라는 점을 돋보이게 내세운 것은 숨진 이씨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③(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